

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③ (생 략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F클래스 수익증권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F클래스 수익증권 : <u>퇴직연금 집합투자기</u> <u>구</u> 및 퇴직연금보험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30일 이상</u>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